

부천서 성고문 사건 재정신청대리인단 성명

이 번 대법원 결정으로 2년 가까운 세월에 걸쳐 은폐되어왔던 성고문 사건의 진상이 밝혀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을 환영하며, 이것이 사법권의 독립을 위한 획기적인 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.

그러나, 이번 대법원 결정은 문제해결의 출발점일 뿐, 해결 그 자체인 것은 결코 아니다.

위 결정을 온 국민이 열망하는 고문근절의 확고한 계기로 만들고 나아가서는 그 동안 기형적으로 왜곡·운용되어온 사법질서를 바로잡는 획기적인 전기로 삼기 위하여, 최소한 다음 몇가지 요구가 반드시 관철되어야 한다.

1. 이번 대법원 결정은 그 내용에 있어서 경험칙상 진실임이 명백한 권양의 주장사실중 일부를 인정하지 아니한 점에서 불완전하며, 이것은 앞으로 있을 문형사에 대한 재판과정에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.
- 따라서 문귀동에 대한 재판과정은 성고문에 관한 진실의 전부를 한 점의 의혹도 남김없이 완전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추상같이 엄정하고 공명정대하게 진행되어야 하며, 공개리에 사건의 전모에 걸친 소상한

심리가 이루어져야 한다.

2. 위 재판과정에서는 또한 문형사의 범행 당시를 전후한 제반 주변

정황이 소상하게 심리되어야 하며, 특히 경찰·검찰 및 이른바 "공

안당국"을 포함한 공권력의 조직적 개입에 의한 범행은폐와 진상왜곡

기도의 전모가 남김없이 구명되어야 한다.

3. 그 동안 권 양에게 20대 초반의 처녀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가혹한

신체적·정신적 박해를 가하면서 범행은폐에만 급급해왔던 정부당국은

그 잘못을 스스로 자인하고 권양과 국민 앞에 사죄하여야 하며, 권

양의 명예회복을 위한 응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 이것은 권양의

정당한 권리일 뿐만 아니라 공권력의 도덕성회복을 위해서도 필요불가결

한 최소한의 조치이다.

4. 특히 검찰은, "폭언·폭행은 있었으나 성모욕행위는 없었다."고

1986. 7. 17.의 검찰수사발표내용이 진실을 왜곡한 허위발표였음을

자인하고 그 발표내용을 분명하게 철회하여야하며, 그같은 허위발표를

하게된 경위를 해명하여야 한다.

아울러 위 발표 당시 권양을 중상모략하는 내용의 정체불명의 "공안당국" 작성명의로 보도자료가 함께 배포된 사실에 대하여 그 자료가 누구에 의해 어떤 근거에 입각하여 작성된 것인지와 어떻게 검찰이 그것을 배포하게 되었는지 그 경위를 소상히 해명하여야 한다.

5. 이 사건의 전개과정에서 사법권의 존엄을 침해하고 검찰권의 독립적 행사를 저해한 외부세력의 작용이 있었음을 우리는 확신하며, 이 점과 관련하여 특히 이른바 "관계기관대책회의"가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 백 일하에 소상하게 규명되어야 한다.